**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01 **복지로(www.bokjiro.go.kr)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통합복지정보 누리집인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관련 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107 손말이음센터 (www.relaycall.or.kr)**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진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06 **국가 취업포털 워크넷 (www.work.go.kr)**

국가 취업포털 누리집으로 일자리 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0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08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구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훈련정보를 제공합니다.

09 **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아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서민금융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국가 취업포털
워크넷 www.work.go.kr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107 손말이음센터
www.relaycall.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차 례

복지서비스 가이드

복지가 궁금하신가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08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10
알려드립니다 12
복지는 쉽다 14

01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18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2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39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51



02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6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3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68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7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73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76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79

03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86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95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100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11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16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118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134

04 보건의료지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54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59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163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165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68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71

차 례

05 노령층 지원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74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78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80
치매가 걱정될 때 183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85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89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193

06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196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202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206
일자리가 필요할 때 209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218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222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32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38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4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243

07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장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246

08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했나요?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68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285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292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299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300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304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312

09 법률복지 지원

법률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314

10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322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339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364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380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18p
0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20p
03 긴급복지 지원제도 ◆ 22p
04 행복주택 공급 ◆ 26p
05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29p
0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32p
07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39p
08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 43p
09 통합문화이용권 ◆ 54p
10 평생교육 바우처 ◆ 58p

11 실업급여 ◆ 62p
12 취업성공패키지 ◆ 63p
13 내일배움카드제 ◆ 65p
14 희망키움통장(I, II) ◆ 68p
15 근로장려금 ◆ 70p
1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72p
17 청년취업아카데미 ◆ 79p
18 일학습병행 ◆ 80p
19 청년내일채움공제 ◆ 81p



20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91p
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95p
22 만 0~2세 보육료 지원 ◆ 100p
23 만 3~5세 누리과정 ◆ 101p
24 가정양육수당 지원 ◆ 102p
25 아동수당 ◆ 103p
26 아이돌봄서비스 ◆ 104p
27 초등돌봄교실 ◆ 116p
28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 126p
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131p
30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136p
31 건강보험 차상위 ◆ 156p
32 의료급여 제도 ◆ 160p
3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69p
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71p
35 기초연금제도 ◆ 174p
36 주택연금제도 ◆ 176p
3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178p
38 치매검진 지원 ◆ 183p
39 노인 틀니 지원 ◆ 186p
40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193p
41 장애인연금 ◆ 200p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 209p
4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212p
44 장애인 활동지원 ◆ 232p
45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243p
4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268p
4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269p
48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271p
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 276p
5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300p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01.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은 왜 필요할까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 육아와 내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봅니다. 복지서비스가 그 시작입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누릴 때 복지서비스 수준도 발전합니다.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02. 나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싶어요

복지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싶나요?

'차례'(4p)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유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대상별 복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나요?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364p)을 활용하세요.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은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322p)와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339p)을 참고하세요. 연령별, 상황별 복지서비스가 보기 쉽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주요기관 연락처는 380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03.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40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서비스, 미처 몰랐던 복지서비스, 훗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25p), 창업자금 지원(44p) 등

취업 지원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업급여(62p), 취업성공패키지(63p), 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등

임신·보육·교육 지원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1p), 보육 지원(100~109p), 방과후 돌봄(116~117p) 등

보건의료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제도(154p), 건강보험 차상위(156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1p) 등

노령층 지원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74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8p), 치아관리비용 지원(186~187p) 등

장애인 지원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2p) 등

이 밖에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0만 7,008	290만 6,528	376만 32	461만 3,536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46만 7,040	632만 544	717만 4,048	802만 7,55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만 2,102	87만 1,958	112만 8,010	138만 4,061	164만 112	189만 6,163	215만 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만 2,803	116만 2,611	150만 4,013	184만 5,414	218만 6,816	252만 8,218	286만 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만 1,084	127만 8,872	165만 4,414	202만 9,956	240만 5,498	278만 1,039	315만 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만 3,504	145만 3,264	188만 16	230만 6,768	273만 3,520	316만 272	358만 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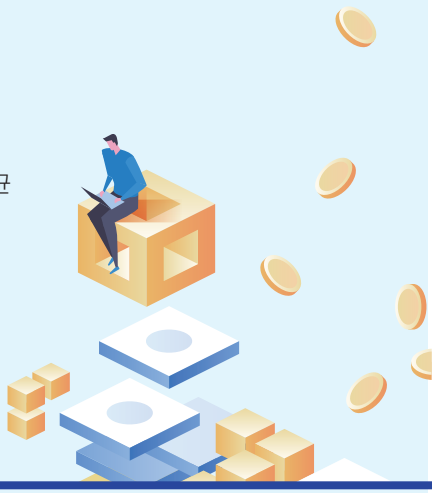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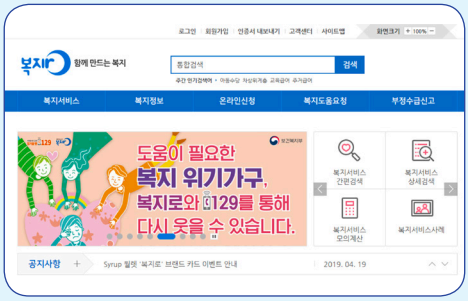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복지는 쉽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 일도, 신청하는 일도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정보를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여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 교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연금





01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table>
<tr><th colspan="2">감면내역</th><th>지원내용</th><th>방법 및 문의</th></tr>
<tr><td rowspan="2">통신요금</td><td>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td><td>▪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td><td rowspan="2">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td></tr>
<tr><td>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td><td>▪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td></tr>
<tr><td colspan="2" rowspan="3">각종 공공요금</td><td>▪ 상·하수도요금 감면</td><td>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td></tr>
<tr><td>▪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td><td>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td></tr>
<tr><td>▪ 전기요금 감면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tr><td>생계급여·의료급여</td><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tr><tr><td>주거급여·교육급여</td><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tr></table></td><td>한국전력(☎123)</td></tr>
<tr><td colspan="2">▪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td><td>시군구에서 일괄 면제</td></tr>
</table>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 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임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96백만 원, 자동차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m²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m²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조건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공사 95%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9,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50만 원, 월임대료 14만 2,500원 수준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4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 종료되기 전까지 무상지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 새시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1만 7,000원(상당) 지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4.12.31 이전 출생자	2014.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5,000원	8,000원	1만 1,500원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만 6,000원	12만 원	14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만 1,000원	12만 8,000원	15만 6,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5월·9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 ~ 9월, 겨울 바우처 10월 ~ 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_2, 곰팡이,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페인트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보금자리론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면지역 100m²)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 (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2. 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 원 이내	7,000만 원 이내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3. 방법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바꿔드림론

1. 대상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햇살론

1.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2. 내용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계자금	1,500만 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 원 이내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청년·대학생 임차자금	2,000만 원 이내
사업자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000만 원 이내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 은행) 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할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저소득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1]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2]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가능) 등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로 대출

(단위: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실납부액 내)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내)	200	1,000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 (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업운영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

3.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곡할인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양곡대금의 50~90% 할인 지원

※ 공급가격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곡 ('18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96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800원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9,41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도 양정담당부서

시도명	부서명	사무실연락처
서울	도시농업과	02-2133-5383
부산	농축산유통과	051-888-4965
대구	농산유통과	053-803-3451
인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7
광주	생명농업과	062-613-3974
대전	농생명정책과	042-270-3805
울산	농축산과	052-229-2944
경기	친환경농업과	031-8008-5451
강원	친환경농업과	033-249-2642
충북	농식품유통과	043-220-3683
충남	식량원예과	041-635-4047
전북	농산유통과	063-280-2627
전남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경북	친환경농업과	054-880-3380
경남	친환경농업과	055-211-6335
제주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2
세종	농업축산과	044-300-4324

사랑의 그린PC 보급

1. 대상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등

※ 보급 후 2년 미만자 재보급 불가

2. 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 보급 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신청

※ 시·도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사랑의 그린PC 누리집 온라인 신청

4. 문의

- 사랑의 그린PC 누리집(lovepc.nia.or.kr)
-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자주 하는 질문

보급되는 PC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 Core 2 Duo 이상, RAM 4GB, HDD 250GB, 모니터 LCD 17인치 이상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시·도에서 매년 초 접수하고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시·도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누리집(lovepc.nia.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비영리단체 증명서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화방 등
- 국내여행 :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목록 확인 후 이용

3.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7일 이내 수령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 15일 이내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 수령 등록 후 사용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자주 하는 질문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19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재발급)은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발급기간(19년 기준 11월 30일) 이내인 경우라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이 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반납 됩니다.(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이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이용 불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용하기'에서 오프라인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가능합니다.
  (최대보유금액 1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개인비용 충전 후 남은 잔액은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5~18세) 이용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상품권은 문화누리카드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19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2~23세 장애인 대상 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예정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신청 → 우리카드에서 카드 발급 및 배송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1.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지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가구의 가장과 청소년 자녀
-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지점,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

2. 내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종류 :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노인복지시설보험

3. 방법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동 추진 사업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혜대상을 발굴해 지원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평생교육 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인 기준 295만 2,663원)인 가구의 구성원

2. 내용

지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기관 ▪ 학점은행 평가인정과정 운영 기관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과정 운영기관

3.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4.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재료비를 포함한 그 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35만 원)을 초과하는 수강료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1. 대상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2. 내용 지역별·업종별 전문 컨설턴트 150명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지원분야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 (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 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비 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전국 170여 개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컨설팅 누리집(co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시스템(con.kinfa.or.kr)

02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Ⅰ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Ⅱ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Ⅰ유형	Ⅱ유형
▪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가구구성원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Ⅰ유형 : 15~25만 원 지급 – Ⅱ유형 : 15~20만 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16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단, 공단 생활관 거주자,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 직업능력개발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000원)
(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 1회 1만 8,000원 (최대 5회 9만 원)
(4단계)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 (1개월 20만 원, 3개월 50만 원, 6개월 50만 원, 12개월 60만 원)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면접참여수당 :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Ⅱ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Ⅰ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마련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6,800원~7만 4,8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 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마련 및 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I, II)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10만 7,249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3만 원 = 월 43만 원
→ 3년 후 약 1,550만 원
II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 후 약 720만 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1,512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4만 1,402원)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지원예시

▪ 월 소득 81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만 5,000원
= 월 39만 5,000원 → 3년간 약 1,422만 원

▪ 월 소득 113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9만 6,000원
= 월 59만 6,000원 → 3년간 약 2,145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중지가 허용됩니다.
'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 중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은 적립중지 (최대 2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적용
- (변경 전)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환수해지
- (변경 후) 복무기간 동안 적립중지 가능하도록 허용('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8.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2018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불가

(변경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가능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평,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 내용

해외유망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 지원(7~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

여성 창업 경진대회

1. 대상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2. 내용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시상 및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1팀 최대 1,000만 원 상금 지급), 수상자는 여성창업 보육실 입주 우대
- 여성 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으로 성공 경험 전수
- 판로개척, 사업전략 등 수상 창업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획득, 홍보물제작 마케팅, CI·BI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3~5월) → 참가업체 선정(6월) → 선정업체 지원(6~10월) → 사후관리(11~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 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2. 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7만 원 지급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사회공헌활동 지원

1. 대상 만 5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사회공헌활동 하루 4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지급

3. 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 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

〈새로운 기술을 익혀 도전하는 일자리〉

- 주택관리사 : 아파트 관리과장이나 소장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단지를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실버잡'이나 '온누리넷' 등을 통해 취업 가능
  - 실버잡 : silverjobs.co.kr
  - 온누리넷 : onrnet.co.kr
- 성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 한국폴리텍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로 보일러과정, 도배과정, 내선공사과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1.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3.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기업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3. 방법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4. 문의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3번, www.k-startup.go.kr)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1. 대상

- 학생 : 대학 재학생/대학 졸업예정자(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 기관 :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

2. 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연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관 : 1인당 교육비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운영기관 20% 자부담)

3. 방법

직업훈련포털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누리집에서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기준 553만 6,243원)가구의 만 18~34세의 청년으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내용

- 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금 지급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고용서비스 지원

3.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4. 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youthcenter.go.kr)

일학습병행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 대상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비진학예정 고3 재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등

2. 내용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3. 방법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상담 → 지원 결정 → 훈련신청 및 훈련수강 → 비용 지원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2. 내용

■ 2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6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 3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3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600만 원(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에서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3,0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30·36개월, 총 7회 적립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정규직 취업 → 청년공제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2년 형 :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 (3년 형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 만기(2년/3년) 지급(2년 근속 시 1,600만 원+이자 /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이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외취업 지원

1.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K-Move 스쿨	▪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미취업자. ▪ 사업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력재학생(휴학생 참여불가)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금	만 34세 이하 취업 비자를 취득한 연봉 2,4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000명)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연봉 1,500만 원 이상인 만 34세 이하로 8구간 소득(월 710만 원) 이하 가구원(3,400명 : 선진국 2,000명, 신흥국 1,400명) ※ 단순노무직 배제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2.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K-Move 스쿨	▪ 최대 1년간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교육비, 취업지원 등을 포함해 1인당 단기 580만 원, 장기 800만 원 한도 내 지원(과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자부담)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금	연봉에 따라 직업소개요금 지원(200만~300만 원) 200만 원은 기관별 인원배정 ※ 취업자에게 추가로 소개요금 청구 불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지원금우대국가* : 취업 1개월 후 300만 원, 취업 6개월 후 200만 원, 취업 12개월 후 300만 원 지원 ▪ 그 외 국가 : 취업 1개월 후 200만 원, 취업 6개월 후 100만 원, 취업 12개월 후 10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총 800만 원 지급 ※ 19년 지원금 우대국가로 편입된 싱가포르 취업자는 19년 취업자부터 우대금 적용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족 자녀
해외취업알선	▪ 해외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 ※ 서울 해외취업센터, 부산 해외취업센터

3. 방법

사업명	지원내용
K-Move 스쿨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내용선택(희망연수과정 선택) → 지원방법(지원하기 클릭)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금	참가기관 모집(참가기관 신청서 제출) → 구인등록 및 구직자 모집 → 취업알선 실시 및 사업 모니터링 → 취업알선지원금 청구(지원금 청구 및 취업 증빙서류 제출)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구직회원 등록) → 취업 성 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장려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장려금 신청(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후) → 3차 장려금 신청 (최초 취업일 12개월 후)
해외취업알선	구직자 구직등록·구인요청(구인신청서) 접수(www.worldjob.or.kr) →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취업비자 적법성, 업체 진위 여부 등) → 구직자 모집·선발 → 기본상담(구직자 해외취업 역량진단 및 컨설팅) → 취업지원(알선) →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비자 발급 등 출국 지원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자주 하는 질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 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한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과정 수료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연수생을 모집중인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연수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창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서울,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룸학교

1.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2. 내용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월 10만 원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3. 방법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www.kpc.or.kr)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www.kdream.or,kr)

알려드립니다

2019년 함께하는 '내일이룸학교' 현황

구 분	기관명	훈련과정
서울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애란원	간호조무사
	(사)예인청소년세상	뷰티아티스트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과제빵
	하나투어 평생교육원	문화관광인재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드론 운용 조종 및 촬영 편집
부산	부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바리스타, 조리사
	더굿세이브부산지부	반려동물관리사
인천	인천실용전문학교	미용사(네일)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HS평생교육원	애견스타일리스트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커피 바리스타자격 및 머신 AS수리과정
경기	남양주직업전문학교	한식·양식조리기능사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	카페 바리스타자격 및 머신 AS수리과정
강원	다온간호학원(속초시꿈드림)	간호조무사
충남	동천안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원	헤어미용
경북	구미직업개발학원	초급 일반사무원 입문과정

03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3원) 이하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총 10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3원)이하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11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11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 무력증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 코드 (하위 코드 포함)	O60	O67 O72	O11 O14 O15	O42	O45	O44 O69.4	O20.0	O41.0	O46	O34.3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 829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91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3.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19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해당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시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2인 기준 직장 9만 4,808원, 지역 7만 5,719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자녀 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540만 원(쌍둥이는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18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만 원×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40만 원×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2. 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3. 방법

근로자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 개선 :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분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
종류</th><th colspan="4">내역</th><th colspan="2">지원한도</th><th>상세 지원내용</th></tr>
<tr><td rowspan="6">설치비</td><td rowspan="5">무상
지원</td><td rowspan="2">대규모
기업</td><td colspan="2">단독</td><td rowspan="2">시설
전환비</td><td>3억 원</td><td>60%
(80%)</td><td rowspan="2">-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td></tr>
<tr><td colspan="2">공동</td><td>6억 원</td></tr>
<tr><td rowspan="3">우선
지원
대상
기업</td><td colspan="2">단독</td><td rowspan="3">시설
전환비
시설
건립비
(시설매입비)</td><td>4억 원</td><td rowspan="3">90%
(40%)</td><td rowspan="3">-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td></tr>
<tr><td rowspan="2">공동</td><td>우선지원대상 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td><td>10억 원</td></tr>
<tr><td>우선지원대상 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td><td>20억 원</td></tr>
<tr><td colspan="2">(공통)</td><td>시설
개보수비</td><td>1억 원</td><td>90%</td><td>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td></tr>
<tr><td rowspan="2">교재
교구비</td><td colspan="2">대규모 기업</td><td rowspan="2">교재
교구비</td><td>5,000만 원</td><td>60%
(80%)</td><td rowspan="2">-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000만 원~7,000만 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000만 원</td></tr>
<tr><td colspan="2">우선지원 대상기업</td><td>7,000만원</td><td>90%</td></tr>
<tr><td>융자</td><td colspan="4">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td><td colspan="2">7억 원
(공동 9억 원)</td><td>-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 제외</td></tr>
<tr><td rowspan="2">운영비</td><td>인건비
지원</td><td colspan="4">원장, 보육교사, 취사부</td><td colspan="2">월 60만 원
(중소기업
월 120만 원)</td><td>〈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 부터 시간제보육
교사인건비 지원</td></tr>
<tr><td>중소
기업
운영비
지원</td><td colspan="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td><td colspan="2">월 200~
520만 원</td><td>〈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 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 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 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 원
- 100명 이상: 월 520만 원</td></tr>
</table>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table>
<tr><th>지원내역</th><th colspan="6">지원한도</th></tr>
<tr><td rowspan="5">직장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td><td colspan="2">월평균 근무 시간</td><td colspan="2">대규모기업</td><td colspan="2">우선지원대상기업</td></tr>
<tr><td colspan="2">주 40시간 이상</td><td colspan="2">60만 원</td><td colspan="2">120만 원</td></tr>
<tr><td colspan="2">주 30시간 이상</td><td colspan="2">55만 원</td><td colspan="2">105만 원</td></tr>
<tr><td colspan="2">주 20시간 이상</td><td colspan="2">40만 원</td><td colspan="2">75만 원</td></tr>
<tr><td colspan="2">주 15시간 이상</td><td colspan="2">30만 원</td><td colspan="2">45만 원</td></tr>
<tr><td rowspan="2">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td><td>현원별 기준</td><td>40명 미만</td><td>40~59명</td><td>60~79명</td><td>80~99명</td><td>100명 이상</td></tr>
<tr><td>지원금(월)</td><td>200만 원</td><td>280만 원</td><td>360만 원</td><td>440만 원</td><td>520만 원</td></tr>
</table>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9)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반	45만 4,000원	40만 원	33만 1,000원
	맞춤반	35만 4,000원	31만 1,000원	25만 8,000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6만 원	22만 원	22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9년 기준)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table>
<tr><th colspan="2">양육수당</th><th colspan="2">농어촌 양육수당</th><th colspan="2">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h>연령(개월)</th><th>금액</th></tr>
<tr><td>0~11개월</td><td>20만 원</td><td>0~11개월</td><td>20만 원</td><td rowspan="3">0~35개월</td><td rowspan="3">20만 원</td></tr>
<tr><td>12~23개월</td><td>15만 원</td><td>12~23개월</td><td>17만 7,000원</td></tr>
<tr><td>24~35개월</td><td>10만 원</td><td>24~35개월</td><td>15만 6,000원</td></tr>
<tr><td rowspan="2">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 원</td><td>36~47개월</td><td>12만 9,000원</td><td rowspan="2">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 rowspan="2">10만 원</td></tr>
<tr><td>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td><td>10만 원</td></tr>
</table>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아동수당

1. 대상

- 0~만 6세(72개월) 미만 모든 아동('19.1~'19.8월까지)
- 0~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19.9월부터)

2. 내용

-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1~'19.8월까지)
-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19.9월부터~)

3. 방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당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1,580원, 질병 완치 시까지)			
				A형(2012.1.1. 이후 출생)		B형(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 원)	7,720원	1,930원	9,843원*	1,737원	8,685원*	2,895원
나형	120% 이하 (553만 6,000원)	5,790원	3,86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다형	150% 이하 (692만 원)	1,448원	8,202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5,790원	5,790원	5,790원	5,790원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 (시간당 9,650원)				종합형(시간당 1만 2,550원)			
		A형(2012.1.1. 이후 출생)		B형(2011.12.31. 이전 출생)		A형(2012.1.1. 이후 출생)		B형(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 원)	8,203원	1,447원	7,238원	2,412원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나형	120% 이하 (553만 6,000원)	5,308원	4,342원	1,930원	7,720원	5,308원	7,242원	1,930원	10,620원
다형	150% 이하 (692만 원)	1,448원	8,202원	1,448원	8,202원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라형	150% 초과	-	9,650원	-	9,650원	-	12,550원	-	12,5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형) 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790원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4.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 월 62만 7,000원 ▪ 경증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 참고(본 책자 160p)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다함께 돌봄 사업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이하 아동

2. 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3. 방법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3.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알려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 여성가족부가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재능기부 등)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9만 82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 (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이하 가정의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아동

2. 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7만 원 한도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제공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이하 가정의 신생아(둘째 아이 이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보청기 지원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 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 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18~29)	-	○ (42~53)	○ (54~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ttp://hi.nhis.or.kr)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만 2세~6세 아동

2.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 제공
- 저소득층 아동의 눈 수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80% (4인 기준 지역 11만 3,534원, 직장 12만 60원) 미만 가구 아동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Hib,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2. 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회(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12~23개월)
일본뇌염	IJJE (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JE (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자	IIV	1**	매년 1회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생후 6개월 ~ 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3. 방법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급·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급·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학생은 전액 무상 지원)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

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대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2. 내용 학습지원, 캠프, 상담, 다양한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예술, 과학, 진로개발, 봉사, 리더십개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주5일, 1일 4시간 이상(석식 포함) 상시 운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방문 및 유선 신청

4.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34, www.youth.go.kr/yaca/index.do)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 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 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급식 및 교육복지

급식, 정보화, 학습,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 등

2.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이내)

3.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소속 학교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1. 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지자체의 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원

2. 내용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등으로 급식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식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급식 지원 여부 통지

4.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 방법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4. 문의 소속 학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여성 청소년
※ 2001년~2008년 생 /2019년 기준

2. 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500원, 연 최대 12만 6,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카드사	가맹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노브랜드, PK마켓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장학금 지원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2. 내용

매월 장학금(30만 원~4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고2)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3. 방법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소속학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등록 및 서류 제출

〈 선발 절차 〉

(1단계) 학생추천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심층평가	▶	(4단계) 최종선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학교별 1인)		제출 서류 진위 여부, 최소 자격 심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최종 장학생 확정
단위학교 (중·고)		한국장학재단		지역별 평가단		장학사업 선발관리위

4. 문의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1학년(중2 진학 예정)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2. 내용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 원 내외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 학교장 추천 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약 300여명 지원

3. 방법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장 추천 및 선발을 거쳐 대상자 확정

4. 문의

소속 학교

자주 하는 질문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꿈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에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포함하되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속적 장학금 수혜가 금지됩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1. 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 2020년 2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선발인원 50명 내외 (고2 80% 내외 선발, 고3 20% 내외 선발)
- 학생 온라인 신청자(교육청 추천자 포함)
-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문교과 (고3) 및 전문교과II(고2)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 12단위(고2) 이상

2. 내용

구분	내용
유학준비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 지원(고2 : 월 50만 원, 고3 : 70만 원) ▪ 지원기간 :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 지급절차 : 서류준비 →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 심사(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 및 선정 → 학생계좌로 개별 입금
유학생 (해외장학생)	▪ 선발기준 :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중 해외대학 에 최종 합격하여 유학생으로 전환 선발(별도 심의 통과자)된 자 ▪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생 유형으로 전환여부 결정 ▪ 지원내역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포함해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3. 방법

교육청 추천 받은 학생 또는 직접 신청자 모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0)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소득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2. 내용

■ I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2019년 소득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 원)

소득구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II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소득구간이란?

-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10개의 구간(1~10구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 당해 연도 국내 및 해외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인 자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2. 내용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내용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 해외장학생 – 연 5만$ 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	▪ 국내장학생 – 장학금(등록금 전액) –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지원 기간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 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 (정규 8학기) ※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 (정규 4학기) 지원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 87점 이상/100점 (B+수준) ▪ 최소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

1. 대상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350원, 교외근로 10,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산·어촌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제외한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2. 내용

- 등록금 :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계속 지원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4.5 만점(3.3 이상/4.3 만점)

- 생활비 : (공통지원) 선발연도 1회 연 15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180만 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인문100년 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대학생 중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구분		선발대상	선발방법
신규 장학생	전공 탐색유형	1학년 입학자	대학 자체 규정에 의거 선발, 추천
	전공 확립유형	3학년 재학생	
계속 장학생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계속지원기준(성적 및 이수학점)을 충족한 1~4학년 재학생 - 성적 : 87점/100점 이상 또는 3.5 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최소이수학점 : 12학점이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생활비	▪ 공통지원: 학기당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당 20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1. 대상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이상
- (학적기준) 지원학기가 정규학기인 학부 재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취창업 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단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1. 대상

■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근무 경력 3년 이상) 중 대학 신입·재학생
(일부 전문대학 학위보유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2. 내용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 대출 지원

학비 걱정을 덜어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4회까지 분할대출 가능)내에서 연 2.2%(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으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생, 대학원생(소득분위 무관)
  -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일반/취업후)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4회까지 분할대출 가능)내에서 연 2.2%(고정금리)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구분	지원대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상기 1순위 외의 농어촌지역 거주자(가구소득 8구간 이하)
3순위	▪ 특별추천자

2. 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드림스타트(www.dreamstart.go.kr)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2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심리정서비 월 최대 20만 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최대 2만 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0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5,000원 이내

3.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 대상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받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2. 내용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자립지원단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자립지원단(www.jarip.kohi.or.kr)

알려드립니다

종합심리검사
- 검사개요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 중 30개 이상 체크된 경우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으로 판단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www.adoncda.or.kr)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9.4월·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 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350만 1,813원)인 자

2.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 원) 수령
주거환경 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자립지원단(www.jarip.kohi.or.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3.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4.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031-333-1900)

자주 하는 질문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에게는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외 일반가정 자녀는 월 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단기과정(4박5일)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 피해, 학업 중단 청소년 등

2. 내용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2. 내용

구분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3. 방법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센터 방문 및 누리집에서 신청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1.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019년 기준, 2001년생~2010년생)
※ 단,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table>
<tr><th>구분</th><th colspan="11">검사항목 및 방법</th></tr>
<tr><td rowspan="2">기본</td><td rowspan="2">건강상담(문진 등)</td><td>요검사</td><td colspan="5">혈액검사</td><td colspan="2">B형 간염검사</td><td>C형 간염검사</td><td rowspan="2">구강검진</td><td rowspan="2">흉부 방사선 촬영</td></tr>
<tr><td>요단백 요잠혈</td><td>혈색소</td><td>혈당</td><td>총콜레스테롤</td><td>AST</td><td>ALT</td><td>B형간염 표면항원</td><td>B형간염 표면항체</td><td>C형 간염항체</td></tr>
<tr><td>선택</td><td>상담료</td><td colspan="3">매독</td><td colspan="4">후천성면역결핍증(HIV)</td><td colspan="3">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td></tr>
<tr><td rowspan="2">확진</td><td rowspan="2">상담료</td><td>고혈압</td><td colspan="2">당뇨병*</td><td colspan="2">신장 질환</td><td colspan="2">이상지질혈증</td><td colspan="2">C형간염</td><td>매독</td></tr>
<tr><td>혈압 측정</td><td colspan="2">공복 혈당</td><td colspan="2">요단백, 요잠혈</td><td colspan="2">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td><td colspan="2">C형간염 정밀검사</td><td>매독 정밀검사</td></tr>
</table>

*체질량 지수가 백분위 수 표준 95이상 또는 BMI 25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3. 방법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4. 문의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청소년 특별지원

1.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단,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인기준)	
중위소득 65%	(지역) 7만 9,933원	(직장) 9만 6,909원
중위소득 72%	(지역) 9만 7,348원	(직장) 10만 7,637원

2.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 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월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으로 필요한 상담 비용 및 서비스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 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연 350만 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및 서비스	월 1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교복지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3. 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 성문화센터

1. 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및 교사

2. 내용
-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58개)로 예약 신청

4. 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www.wesay.or.kr)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 대상 성매매 피해 청소년

2. 내용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성매매 재유입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 성장캠프과정	희망키움과정	상담 및 사례관리
- 심리진단 프로그램 - 치유/치료 프로그램 -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 - 탈성매매 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 진로탐색 - 성인지·성주체성향상 - 예술심리치유 - 인문학, 관계개선 등	- 심리·정서적지원 - 의료·법률지원 - 학업지원 - 귀가지원 - 자립지원 - 멘토지원 - 유관기관 연계

3. 방법 전화 상담 교육신청

4. 문의
- 중앙청소년교육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8, 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1. 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2. 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 인터넷치유캠프(11박 12일) ▪ 가족치유캠프(2박 3일)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 치유 전담시설)의 상설 치유 프로그램(1~4주 과정)
중독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일반청소년 : 최대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인 취약계층 : 최대 50만 원

3.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 평가 후 중독단계별 지원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 지원 (Wee프로젝트)

1. 대상

심리·정서적문제등으로학교부적응을겪고있는학생(학교폭력, 학업중단위기,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비행 등) 및 학생과 관련된 상담을 희망하는 보호자 및 교사

2. 내용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

구분	지원내용
Wee클래스 (학교)	잠재적 위기 학생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심리검사, 자문 수행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시·도 교육청)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시·도 교육청)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대상으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 Wee클래스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담임교사를 통해 접수 의뢰
- Wee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소속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 Wee스쿨 : Wee센터 및 학교장을 통해 접수 의뢰
- 가정형 Wee센터 : Wee센터 및 학교장을 통해 접수 의뢰

4. 문의

- Wee 누리집(www.wee.go.kr)
-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043-530-9182, 918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_Net)

1. 대상 만9~24세 위기청소년 및 가족

2. 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연계·협력)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ly-Net)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전화 1388

1. 대상 만9~24세 청소년

2. 내용 일상적인 고민부터 다양한 위기(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4. 문의

- 청소년 전화 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대상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내용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신청

4. 문의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필요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대상

만 16~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 간 청소년 교류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운영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10~20명(국가별 상이) ▪ 모집시기 : 3월, 5월 중 ▪ 참가비용 : 왕복항공료의 80%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 관련 기관방문,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체험 및 탐방 ▪ 교류국가 : 연간 10여 개국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 참가자격 : 만 15~20세 청소년 ▪ 파견시기 : 7~8월중 ▪ 파견규모 : 140여 명 ▪ 모집시기 : 4월 중 ▪ 참가비용 : 1인당 64만 원 이하(국가별 상이) ※ 취약계층은 전액지원 ▪ 주요내용 : 노력봉사, 교류활동 등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 참가자격 : 만 16~24세 청소년 ▪ 파견기간 : 10일 내외 ▪ 모집인원 : 20여 명 ▪ 모집시기 : 연중 ▪ 참가비용 : 왕복 항공료의 30% 혹은 80%(행사별 상이), 참가비, 체재비 및 활동비 ※ 소외계층은 참가비 전액 지원 ▪ 주요내용 : 타 국가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행사 참여

3. 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www.youth.go.kr/iye)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4. 문의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02-330-2892, 2896, 2898)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www.youth.go.kr/iye) Q&A 게시판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학교단체 등 유관기관

2. 내용

사업과제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 정책과 사회적 변화, 청소년 활동 요구조사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 개발(발굴 포함) 및 현장 보급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지역 내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교육 연수 과정 운영,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 청소년 및 관계자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제공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 및 관계자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제공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 제도 안내 및 컨설팅 ▪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 안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보 안내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공동협력 사업 등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 사업

3. 방법

17개 시·도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문의

4. 문의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044-864-7935

청소년활동 지원

1. 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3. 방법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지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 시설, 단체 등 법인 선정

4. 문의
- 각 지자체 청소년 활동 지원 부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www.kywa.or.kr)

알려드립니다

국립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청소년 활동을 누려보세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국립수련시설 이용신청'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특성화캠프, 가족캠프 등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1. 대상

다문화가족 청소년,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2. 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사례관리 연계 및 기관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등 지원 ▪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 청소년 초기 적응을 위한 비교문화체험 및 동기 모임 실시
진로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 10대 후반~20대 초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개인·집단 맞춤형 상담 및 통번역 상담 실시 ▪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통·통' 통합 캠프 실시

3. 방법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4.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02-722-2585, www.rainbowyouth.or.kr)

04 보건의료지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3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50만 원(다태아 90만 원) 지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91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일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자주 하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5만 5,120원, 지역가입자 15만 6,96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입원진료비 및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table>
<tr><th>구분</th><th>본인부담금 보상제</th><th>본인부담금 상한제</th><th>대지급금 지원</th></tr>
<tr><td rowspan="2">1종
수급자</td><td>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td><td>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td></tr>
<tr><td rowspan="2">2종
수급자</td><td rowspan="2">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td><td>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td><td rowspan="2">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1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td></tr>
<tr><td>(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td></tr>
</table>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3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발생시일괄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질환군별 연간 365일

2. 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r>
<tr><td>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td><td>▪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td></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table>
<tr><th>구분</th><th>(1차)
4–6
개월</th><th>(2차)
9–12
개월</th><th>(3차)
18–24
개월</th><th>(4차)
30–36
개월</th><th>(5차)
42–48
개월</th><th>(6차)
54–60
개월</th><th>(7차)
66–71
개월</th></tr>
<tr><td>건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학생
건강검진</td><td>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td></tr>
<tr><td>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td><td>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td></tr>
</table>

2. 내용

<table>
<tr><th>구분</th><th>목표 질환</th></tr>
<tr><td>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td><td>▪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table>
<tr><th>성·연령별 검사항목</th><th>실시시기</th></tr>
<tr><td>골밀도검사</td><td>만 54, 66세(여성)</td></tr>
<tr><td>인지기능장애</td><td>만 66세 이상 2년 1회</td></tr>
<tr><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td>만 20, 30, 40, 50, 60, 70세</td></tr>
<tr><td>생활습관평가</td><td>만 40, 50, 60, 70세</td></tr>
<tr><td>노인신체기능</td><td>만 66, 70, 80세</td></tr>
</table></td></tr>
<tr><td>암검진</td><td>▪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td></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td></tr>
<tr><td>학생건강검진
(교육부)</td><td>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색각이상유무,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td></tr>
<tr><td>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td><td>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등</td></tr>
</table>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 환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만 6,000원,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원)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476만 3,626원) 미만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91개), 간병비(월 30만 원, 대상질환 95개)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53만 6,243원) 미만인 사람(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19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1만 2,102	87만 1,958	112만 8,010	138만 4,061	164만 112	189만 6,163	215만 2,21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만 6,051원씩 증가(8인 가구 240만 8,265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가암 관리

1. 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내용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전국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2. 내용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경감

3. 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필요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서비스'가 2019년 전국 58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2,1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05 노령층 지원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 내용

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어르신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	30만 원	48만 원 (1인당 24만 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25만 3,750원	40만 6,000원 (1인당 20만 3,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 5,000원에서 25만 3,750원까지 차등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9년에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59만 5,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9년 3월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 4주(주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 2주(주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가점 부여)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친화기업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구분		지원내용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3. 방법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대상 어르신

2.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 가족이나 이웃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2. 내용 방문상담, 집단 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지원

3. 방법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 대상 50세 이상 국민

2. 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3.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알려드립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더 보기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어르신의 욕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 어르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어르신&협력프로젝트 : 어르신과 청년/어린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등)의 찾아가는 공연

고령층 정보화교육

1. 대상 55세 이상

2. 내용 모바일,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신기술 체험 등 ICT 활용 및 고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8,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무료 정보화교육
- 모바일,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신기술 체험 등 ICT 활용 및 고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배움나라(www.estudy.or.kr)'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
(☎053-230-1398, www.estudy.or.kr)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 6,243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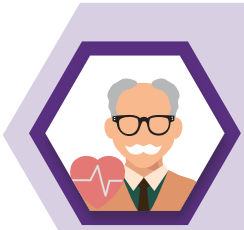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MRI 검사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19년 5월 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검사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고
치아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34만 3,916원) 이하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 접종기관: 보건소(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 접종백신 및 접종횟수: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인플루엔자	- 접종기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접종백신 및 접종횟수: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무료접종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도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독거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2인 기준 직장 15만 844원, 지역 15만 1,910원) 이하인 어르신
-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부부 가구, 조손가정 어르신*이 대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어르신 또는 고령의 어르신 부부 중 시군구 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2. 내용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방문 (9일, 12일)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9일, 12일)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가사 (월 24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 독거어르신

2. 내용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안전확인 서비스는 직접확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 주 2회 이상

※ 생활교육은 생활 관리사별 월 1회, 독거어르신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3. 방법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2. 내용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 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시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정부대표전화(☎110)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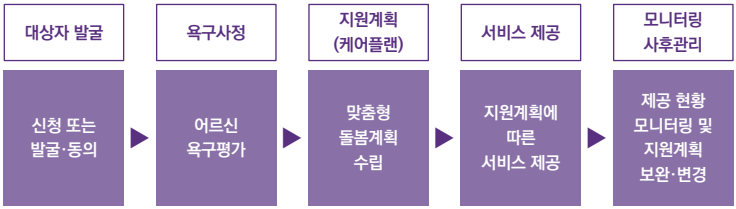
1. 대상 노화,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생활하기 희망하는 사람

2. 내용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통합안내 및 통합 제공기반을 갖추어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생활을 지원

※ 각 지자체별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주거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3. 방법 신청기관 : 5개 선도 지자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모델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5개 선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우선 제공('19.6~), 추후 확대 실시



4. 문의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선도사업 지자체	중점내용	문의
광주광역시 서구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 전담 관리 및 연계	복지일자리국 (☎ 062-360-7755)
경기도 부천시	10개 광역동 별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보건·복지·재가 등 활성화	복지국 (☎ 032-625-9011)
충청남도 천안시	공공 거점 종합재가센터 신설 및 천·사 (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복지문화국 (☎ 041-521-2321)
전라북도 전주시	동 중심 종합재가서비스, 주거복지센터 운영, 전주형 동네돌봄 모델(5종) 등	복지환경국 (☎ 063-281-2845)
경상남도 김해시	희망e음(48개 민·관 참여) 센터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연계제공	시민복지국 (☎ 055-330-6714)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table>
<tr><th>감면내역</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h>방법 및 문의</th></tr>
<tr><td rowspan="3">교통비</td><td rowspan="3">65세
이상
어르신</td><td>▪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td><td>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td></tr>
<tr><td>▪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td><td>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td></tr>
<tr><td>▪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td><td>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td></tr>
<tr><td>문화
활동비</td><td>65세
이상
어르신</td><td>▪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td><td>입장 시 신분증 제시</td></tr>
<tr><td rowspan="2">국민
건강
보험료</td><td>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td><td>▪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
<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r>
<tr><td>소득</td><td colspan="3">360만 원 이하</td></tr>
<tr><td>재산</td><td>6,000
만 원 이하</td><td>9,000
만 원 이하</td><td>1억 3,500
만 원 이하</td></tr>
<tr><td>경감률</td><td>30%</td><td>20%</td><td>10%</td></tr>
</table></td><td rowspan="2">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td></tr>
<tr><td>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td><td>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td></tr>
</table>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06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
②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
③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
④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
⑤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⑥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⑦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⑧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 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9년 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2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7만 3,750원 ▪ 기초급여 25만 3,75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차상위계층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원격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종일반 운영(방과 후 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얍	blind.nise.go.kr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4만 5,150원 12월 : 163만 6,00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7만 2,580원 12월 : 82만 6,65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6만 7,60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1만 3,740원 12월 : 104만 5,50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09만 3,850원 12월 : 102만 7,05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1.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 우선)

2. 내용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참여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조건)

3.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 : 수시 신청
- 한국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의 훈련 : 별도의 모집기간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민간기관 훈련생에게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10만 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 원 지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경증남성</th><th>경증여성</th><th>중증남성</th><th>중증여성</th></tr>
<tr><td rowspan="4">2017년 발생분 까지</td><td>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td><td>30만 원</td><td>40만 원</td><td rowspan="4">40만 원</td><td rowspan="4">60만 원</td></tr>
<tr><td>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td><td>21만 원</td><td>28만 원</td></tr>
<tr><td>만 5년 초과</td><td>15만 원</td><td>20만 원</td></tr>
<tr><td colspan="3">※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적 지원</td></tr>
<tr><td colspan="2">2018년 발생분 부터</td><td>30만 원</td><td>40만 원</td><td>50만 원</td><td>60만 원</td></tr>
</table>

※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원

※ 중증여성은 2016년도 발생분부터 60만 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 원 적용)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18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민간사업주 2.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장애인용 작업 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초과 100%
(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최대 1,000만 원(청년 창업자 2,000만 원)이내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검사비 지원

1.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3. 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내용 2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4.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1. 대상

-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15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2. 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105만 원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44/88/12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19.3월부터)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 2,807원, 지역 29만 7,628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19. 하반기 예정)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복귀를 지원

※ 현재 전국 3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4. 문의

- 서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 보라매병원 ☎02-870-2071)
-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충남대학교병원 ☎042-333-2229)
-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8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아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53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3만 원~353만 9,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21만 9,000원	
3등급	92만 1,000원	
4등급	61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무료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6,92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1. 대상

시청각장애인(저소득층 우선보급)

2. 내용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3. 방법

- 시청각장애인용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반영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등

2.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수화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2.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3. 방법 지역별 수화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나 민원24 (www.minwon.go.kr)로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 (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1~3급)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07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1만 원~571만 4,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1만 ~ 27만 원
- 4인 이상 가족 : 26만 ~ 32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38만 원	37만 5,000원	37만 원	36만 5,000원	36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기준 322만 9,475원) 이하인 자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3만 5,000~46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0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0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4,500만 원 5,500만 원 7,00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 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3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피해	2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28만 3,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5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09만 1,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2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93만 4,000원	68만 9,000원	45만 2,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66만 4,000원	129만 2,000원	103만 8,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20만 8,000원 ~ 238만 7,000원	76만 3,000원	230만 6,000원	153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00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61만 3,000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손)자녀 제외]	40%(의료급여수급자는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경감대상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10%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약제비 제외)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5개 지방보훈청 및 인천지청 방문 및 유선 접수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19. 5. 6.까지 리터당 190원 지원 / 이후 리터당 220원 지원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 및 임차, 아파트 임대,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 (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4. 문의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 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정보화자격증 취득,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9%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10%)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197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032-550-340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6,920원) 이하인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61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유가족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 원, 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

※ 접수기간 : 1학기(2019년 3월 1일~3월 15일), 2학기(2019년 9월 1일~9월 15일)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

08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이신가요?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미혼모·부 초기지원

1.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거점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 미혼한부모지원 → 양육 및 자립)

4.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51만 1,39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 (12개 시도* 운영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 한부모 72%)*이하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중위소득 60%(2인 기준 174만 3,917원), 72%(2인 기준 209만 2,700원)

2.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3.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74만 3,917원)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09만 2,700원)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9만 9,039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1. 대상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2.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3.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4.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5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참조(본 책자 100p)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방법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18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22p)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 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3년 이내 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2. 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의 이해(최대 70시간) 과정 제공
※ 과정 이수자에게 귀화·영주·체류자격변경 시 혜택 부여
※ 전국 300여 개 기관에서 운영

3. 방법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www.socinet.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1.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수준의 다문화·탈북 학생

2. 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 지원
※ 활동시간 : 학기당 450시간 이내,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중 주당 40시간 이내)

3. 방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VMS·1365(정부인증포탈)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에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1.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2. 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스마트폰, SNS, 멀티미디어 활용법 등 방문 정보화교육 무료 지원(3~11월)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02-2663-8710, www.itstudy.or.kr)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 대상 다문화가족

2. 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2. 내용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이용 시 통역 및 번역 지원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3.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3. 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2. 내용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 제공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한국생활정보 제공, 개인·부부·가족 갈등해결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통역 상담 등

3. 방법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 상담

4.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2.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3.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성폭력 피해자

2. 내용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서비스 제공

3. 방법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 (전담의료기관) 의료 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 지원 / (통합지원센터) 수사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호·사회복귀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2. 내용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 원스톱 지원(365일 24시간 운영)

※ 폭력이 초래한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

유형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16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아동형 (7개소)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성별 지적장애인)	월~금 9시~18시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통합형 (16개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모든 연령 및 성별 포함)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장기 상담과 치료 지원

3. 방법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 후 이용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료 → 인권보호)

알려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순차적 상담 및 지원

– 상담 지원(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 의료 지원 (법의학적 증거물 확보, 피해자 응급조치 및 치료 지원) → 수사·법률 지원(피해자 진술, 피해자 지원제도 ,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등) → 심리 지원(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 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동행 서비스(상담·심리·수사·법률·의료 지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 지원) → 사회적 지원(외부기관·외부자원 연계, 돌봄비 지원 등)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1. 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
의료적 지원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 지원	취업 알선, 직업훈련 연계, 퇴소 후 거주지 알선 등
기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3. 방법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상담 후 이용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인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전국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자녀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3. 방법

가정폭력 피해 발생 →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지원 / (의료기관) 의료지원 /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지원 / (경찰·검찰) 수사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립 지원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ID(women1366)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2.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3.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4.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무료 지원

3.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2.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성매매 피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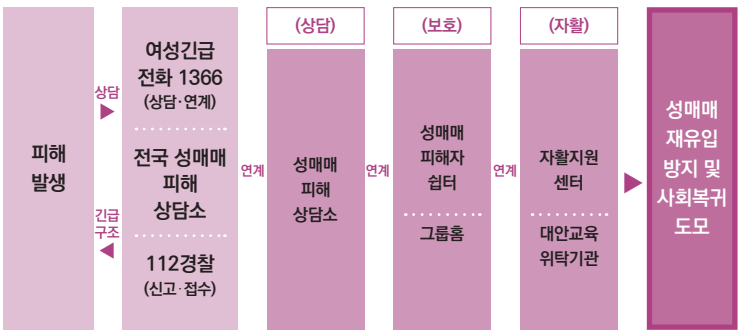
1.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성매매피해자 쉼터 (성인,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 아웃리치, 치료·안정
자활지원센터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업지원 등
대안교육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3. 방법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에서 확인)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義脂),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대상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_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3. 방법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19년 376만 32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_2) 질병판정자
  - 3개월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 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 원				1,500만 원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1년거치4년, 2년거치3년, 3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과거 사업주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부터 산재 신청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산재장해인, 진폐의증자,
-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2.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대상

- 원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월 30만~6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3.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1.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재활보조기 234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15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9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 수리료 119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3.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1.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2.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1~4인 90%, 5~9인 80%) 지원

*기가입자 : 시행일 현재 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신규가입자 : 1년 이내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3. 방법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4.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자주 하는 질문

고액자산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근로자로 보험료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
③ 전년도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 내용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림축산식품부)

3. 방법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2.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만 3,650원)

3.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

※ 신청 생략 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1.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2.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3.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4.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1. 대상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2. 내용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 불가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대상 어선원 및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총 보험료의 15~71%까지 지원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1588-4119)

알려드립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Sh수협은행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게을리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25)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1. 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2.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5,000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1.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2.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 1일 인건비 7만 원 중 4만 9,000원(70%)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1.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가구 및 어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포함) 및 수급자(중위소득50%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2. 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용 지원
- 1일 1만 2,000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3. 방법 거주지 지역 수협에 신청

4. 문의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6)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도우미)

1. 대상
-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2. 내용
- ■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어업도우미 최대 30일 이내
  -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80%)지원

3. 방법
- ■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 각 시도 담당사무소
- ■ 부산 |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 경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2)
- ■ 강원 | 환동해본부(☎033-660-8361)
- ■ 인천 |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 ■ 충남 | 어촌산업과(☎041-635-6960)
- ■ 전북 |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 전남 | 해양수산기술원(☎061-550-0649)
- ■ 경북 |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 제주 | 수산정책과(☎064-710-3215)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1. 대상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2. 내용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세금 및 수수료 감면

3. 방법 해당 시군구에 신청(연중) → 대상자 선정(다음해 2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
-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내용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의 20% 지원
※ '19년부터 차량운임은 1,000cc 미만 50%, 1,600미만 30%로 확대 지원

3. 방법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4. 문의 해양수산부(☎044-200-5773~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1. 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ha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ha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2.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2.45%) 및 저축장려금리(0.9~4.8%) 지급,
비과세 이자소득 적용

3.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4. 문의

- NH농협은행(☎1588-2100)
- Sh수협은행(☎1588-1515)
- 산림조합(☎02-3434-7222)

자주 하는 질문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는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희망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 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읍면)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위탁운영자

2. 내용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운영비 지원

3. 방법 사업희망자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4.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1. 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2. 내용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3. 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1.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 신청기간 제한 : 인정통보일로부터 3년
※ 의상자의 경우 등급별 차등 지원

3.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4. 문의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2,172만 8,000원
■ 의상자 : 1~9급별로 나눠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위 금액은 2019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3년(근로무능력가구 5년)까지 특례* 적용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3. 방법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1.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2004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2019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한방)질환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 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 원 ※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불임 (일반포함)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장기이식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 원 ※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 원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510만 원 지급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3주 출생 자녀 양육 가정 등 취약계층 최대 1,540만 원 지급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신청

4.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기본금·가산금 ☎031-670-9350, 장려금 ☎031-670-9328)
-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1.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2.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3. 방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신청

4.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 장학금, WEST(한미취업연수) 및 호주어학, 영국어학취업 연수,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3. 방법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 입학 지원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1)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4년 간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수도권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일정 시간의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장려금 지급 ▪ 500시간 이상 최대 120만 원 ▪ 620시간 이상 최대 140만 원 ▪ 740시간 이상 최대 160만 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에게 추가장려금 20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 시 200만 원 지급

3. 방법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에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9)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

2. 내용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를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
※ 기존 국고지원 시설에 한함

2. 내용

-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 노숙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보수 등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0개소)

시도	시설명	주소	전화
서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부산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동구 고관로 46	051-463-7707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051-463-1127
대구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대전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 동구 대전로 839번길 75	042-221-8331
경기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	031-238-85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31-846-4232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탑동로 15길 2	064-753-0711

법무보호복지 사업

1.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2.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합동결혼, 의료시혜, 주민등록 재등록, 결연보호 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가족희망사업
상담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사회성향상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3.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하여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

피해인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38만 600원	3,910만 7,250원	260만 7,150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단,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99만 4,030원	1,955만 3,620원		
석면폐증	1급				
	2급	66만 2,680원	1,303만 5,750원		
	3급	33만 1,340원	651만 7,870원		

3. 방법 전국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40만 4,000원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간병비	(종일) 8만 2,000원, (반일제) 12시간 5만 9,000원
	병원간병비 특수단가	-사지마비, 보행불가, 응급실, 폐쇄병동 입원 등 (종일) 9만 3,000원, (반일제) 12시간 7만 원
	가정간병비	(종일) 8만 8,000원, (반일제) 12시간 6만 5,000원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81만 9,000원, 호스피스 및 요양병원 입원비 월평균 660만 원, 6개월 까지 지원	
장례비	1인당 500만 원 이내 지원	
기타	법률상담,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3.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에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www.hermuseum.go.kr)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건강검진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매년 1회 단가 35만 원 건강검진 지원
  (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정밀검사비용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15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및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진폐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진폐 위로금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52만 7,622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전년도(2018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 지급(세대당 연간 60만 원)

3.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의 90% 지원(1회 500만 원 내)

3. 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기계·시설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2.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table>
<tr><td>대상재해</td><td>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td></tr>
<tr><td>지원규모</td><td>주민 부담보험료의 34~92% 지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보험료 지원율</th></tr>
<tr><td rowspan="2">일반</td><td>주택 및 온실</td><td>52.5~92% 지원</td></tr>
<tr><td>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td><td>34~92% 지원</td></tr>
<tr><td colspan="2">차상위계층</td><td>75~92% 지원</td></tr>
<tr><td colspan="2">기초생활수급자</td><td>86.2~92% 지원</td></tr>
</table></td></tr>
<tr><td>지원예시</td><td>
<table>
<tr><td>가입조건</td><td>단독주택(80㎡),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90% 보장상품</td></tr>
<tr><td>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td><td>일반가입자(소유자) 1만 8,050원
차상위계층(세입자) 1,170원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650원</td></tr>
<tr><td>보험금지급액</td><td>일반가입자(소유자) 7,200만 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720만 원</td></tr>
</table></td></tr>
</table>

3.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5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4. 문의

- 행안부 재난보험과(044-205-5355),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 제공
생계비	범죄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급(최대 6개월)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 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3.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대상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40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3. 방법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읍면동 주민센터), 소득조사(시군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9 법률복지 지원

법률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차량 방문일정은 공단 누리집(www.klac.or.kr)에서 확인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마을변호사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법무부(☎02-2110-3178)

법문화교육센터

1.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사 등

2. 내용
- ■ 사회통합 과정 :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 결혼생활 과정 : 결혼법, 상속법
- ■ 경제생활 과정 :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보장법
- ■ 준법생활 과정 : 기초질서, 교통질서

※ 청소년 : 아동의 권리, 세계의 현명한 재판, 민주주의 꽃 선거 등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132, www.klacedu.or.kr)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마을세무사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692만 원)이하 농·어업인

2.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 (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유료
	장애인(4~6급)		
	전시납북자가족	무료	무료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재도전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인(1~3급)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무료	무료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80%이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일부)무료	(일부)무료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방법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함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대구(☎053-756-180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 주택 임대차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상가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및 권리금 등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www.hldc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1801),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1. 대상

-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소액체당금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2. 내용

-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종류	지급상한액
일반체당금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180만 원, (휴업수당)126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금)260만 원, (휴업수당)182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금)300만 원, (휴업수당)21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금)280만 원, (휴업수당)196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210만 원, (휴업수당)147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400만 원

알려드립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이내, 위 표 참고)을 받을 수 있어요.

3. 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 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4. 문의

- 고용노동부(☎1350)
- 근로복지공단(☎1588-0075)

10 복지서비스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18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20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5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5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2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8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9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3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2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2
	주거급여(맞춤형급여)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33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LH마이홈(☎1600-1004)	3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4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3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36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3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38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국토교통부(☎1599-0001)	40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0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국토교통부(☎1599-0001)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1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2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1397)	43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1397)	44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44
	햇살론	▪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콜센터(☎1397) ▪ 사업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45
	안전망 대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46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1397)	4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4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48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49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콜센터(☎1397),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5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5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1
	양곡할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2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53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54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5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57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서민금융콜센터(☎1397)	57
	평생교육 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3005)	58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1397)	59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64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5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6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1588-3249)	67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희망키움통장(Ⅰ,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8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9
	청년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9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0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1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72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3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74
	여성 창업 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5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6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K-스타트업(☎1357 → 3번)	78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7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79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0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82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84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7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요양비(출산비)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89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0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9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2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94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5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8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9)	99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100
	만 3~5세 누리과정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101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2
	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1577-2514)	10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106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8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109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2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13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3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114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5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5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116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34)	117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8
	급식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9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9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0
	학교 우유급식	소속 학교	121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소속 학교	12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전화(☎1388)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1번)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12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3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꿈사다리 장학제도)	소속 학교	124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5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세자녀 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7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8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8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9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1유형)	한국장학재단(☎1599-2290)	130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30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134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5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36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7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13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8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14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41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전화(☎1388)	142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1388)	143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144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여성인권 진흥원(☎02-6363-8408)	144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145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지원 (Wee프로젝트)	Wee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14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_Net)	청소년전화(☎1388)	147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전화(☎1388)	14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전화(☎1388)	148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02-330-2892, 2896, 2898)	149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0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151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02-722-2585)	15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4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5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157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 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8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8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시군구청	159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0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3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7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168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9
	재가암 관리	전국 보건소	16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7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72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4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5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5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76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77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178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18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181
	고령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053-230-1398)	182
	온라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053-230-1398)	182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4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85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6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7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188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0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정부대표전화(☎110)	19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일자리국(☎ 062-360-7755)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032-625-9011)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041-521-2321) 전라북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063-281-2845) 경상남도 김해시 시민복지국(☎ 055-330-6714)	192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등	193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6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8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9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0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206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44-203-6560)	207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44-203-6561)	207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20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08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0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2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4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6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8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19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19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0
	근로 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1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23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24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6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226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7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28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8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보라매병원 ☎02-870-2071)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333-2229)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230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0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23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1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LH마이홈(☎1600-1004)	233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23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35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35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3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23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콜센터(☎126)	238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청 콜센터(☎126)	238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02-2100_3399)	23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콜센터(☎126)	240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청 콜센터(☎126)	240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2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088)	242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42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	243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 일 때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8
	영주귀국 정착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8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9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0
	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0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1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1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 일 때 (보훈급여금)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 일 때 (생활안정 지원)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보훈병원진료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25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258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26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6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 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 (☎02-782-0427)	265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68
	미혼모·부 초기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268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69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1544-9654)	269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1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2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73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마이홈(☎1600-1004)	27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274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7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75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290)	275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02-2663-8710)	27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7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7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78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8
가족이 특별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279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79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280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283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283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4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5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7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288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9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9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0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291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9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292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293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29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293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294
	취약농가 인력 지원 (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294
	취약어가 인력 지원 (가사도우미)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6)	295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취약어가 인력 지원 (어업도우미)	**각 시도 담당사무소**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2) ▪ 강원 환동해본부(☎033-660-836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 충남 어촌산업과(☎041-635-6960)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기술원(☎061-550-0649) ▪ 경북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295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담당자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담당자	296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33~4)	296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588-2100) Sh수협은행 고객만족센터(☎1588-1515) 산림조합(☎02-3434-7222)	297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298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98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99
북한 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300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30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301
	탈북학생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301
	탈북학생 교육 지원 (학력인정 등)	▪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301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1)	30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9)	30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303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03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4
	법무보호복지 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305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30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30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07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07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8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8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9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3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11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12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314
	마을변호사	읍면동 주민센터, 법무부(☎02-2110-3178)	314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132)	315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315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315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316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대구(☎053-756-180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	318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02-3482-1708),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1801),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318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9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서비스 목록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6
임신기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7
	영양플러스	8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88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8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6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90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88
출산비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9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
	요양비(출산비) 지원	89
	출산비용 지원	90
출산이후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10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97
	육아종합지원센터	108
	육아휴직 급여 지원	96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9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98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5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2
	아동수당	103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73
	만 0~2세 보육료 지원	100
	만 3~5세 누리과정	10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6
	시간제 보육 지원	106
	장애아동수당	198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이용 아동)	205
	장애아동 양육수당	203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3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3
	건강보험제도	154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11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1
	언어발달 지원	227
	영양플러스	89
	영유아 건강검진	113
	어린이 불소 도포	115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113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9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98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34
	아이돌봄서비스	104
	육아종합지원센터	10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9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3
	입양아동 지원	107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온라인 정보화교육	18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2
	통합문화이용권	5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198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5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69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3
	건강보험제도	154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지원	145
교육	고교학비 지원	118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19
	급식비 지원	1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1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3
	스포츠강좌이용권	56
	온라인 정보화교육	182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8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5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_Net)	147
	지역아동센터 지원	117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2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17
	초등돌봄교실	116
	학교우유급식	121
교육 (역량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149
	청소년 특별지원	143
	청소년활동 지원	151
보호 (돌봄·안전)	다함께 돌봄 사업	108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7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39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3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4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229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48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36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3
	입양아동 지원	107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입양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26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22
	통합문화이용권	5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
자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3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13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37
심리지원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상담지원	146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44
	청소년 성문화센터	144
	청소년전화 1388	147
	청소년치료 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40
특수상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4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41

청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교육	국가근로장학금	128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26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2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2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27
	인문100년장학금	129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130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130
교육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3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31
고용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80
	내일배움카드제	65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4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여성 창업 경진대회	75
	일학습병행	80
	청년내일채움공제	81
	청년취업 아카데미	7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79
	내일이룸학교	84
	취업성공패키지	63
	해외취업지원	82
주거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행복주택 공급	26
주거 대출	버팀목 대출 보증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0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1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3
	건강보험제도	15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중장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취업성공패키지	63
	공공산림가꾸기	67
	내일배움카드제	65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4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여성 창업 경진대회	75
	사회공헌활동 지원	7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78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48
	근로장려금	70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자녀장려금	71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5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5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9
	버팀목 대출 보증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40
	보금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1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182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3
	건강보험제도	15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기타	노후준비서비스	175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174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75
	노후준비서비스	17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193
	은퇴금융 아카데미	177
	주택연금제도	17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
건강	국가건강검진 제도	163
	건강보험제도	15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57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85
	노인틀니 지원	18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90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188
	성인암 환자 의료비지원	165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87
	치매검진 지원	18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84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76
	공공산림가꾸기	6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8
	사회공헌활동 지원	77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6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5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5
	행복주택 공급	26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9
	버팀목 대출 보증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40
	보금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돌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1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9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9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9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192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94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182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8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8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81
	온라인 정보화교육	182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29
	발달재활 서비스	228
	장애검사비 지원	225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2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26
	장애친화 건강검진	23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3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2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07
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04
	아이돌봄서비스	10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4
	장애아동수당	198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6
	장애아동 양육수당	2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3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20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34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235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06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237
	장애인 정보화교육	20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8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33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233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무료 법률 구조제도	235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36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38
	의료급여 제도	160
	장애수당	19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34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2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22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40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238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장애인연금	2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239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2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3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1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40
돌봄 (안전·활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217
	수화통역센터	24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2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33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0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34
	장애인 보장구 급여	2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26
	장애인 복지관	241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4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3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31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41
	장애인 체육시설	242
	장애인 활동지원	23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2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22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69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229
임신·출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2
	출산비용 지원	90
고용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17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21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2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14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14
	장애인 창업육성	22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19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1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213

한부모

구분	사업명	페이지
양육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72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69
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2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27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69
주거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2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70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274
	의료급여 제도	160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24
	미혼모·부 초기지원	268

다문화북한이탈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274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8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300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30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301
	의료급여 제도	160
기타생활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7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7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303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73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7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7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76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27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275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301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302
	사랑의 그린PC 보급	5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52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01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278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302
주거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73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303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건강보험 차상위	156
	근로장려금	7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0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27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8, 27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57
	양곡할인	5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2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15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61
	의료급여 제도	160
	자녀장려금	71
	통합문화이용권	54
자금대여	새희망홀씨	47
출산	출산비용 지원	90
건강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61
	재가암 관리	169
교육	고교학비 지원	118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22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19
	급식비 지원	119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1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3
	사랑의 그린PC 보급	53
	스포츠강좌이용권	56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121
	평생교육 바우처	58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24
	학교 우유급식	121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자활근로	66
	취업성공패키지	63
자립	내일키움통장	6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37
	희망키움통장(Ⅰ, Ⅱ)	68
주거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2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2
주거환경 개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4
	에너지바우처	3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38
돌봄 (안전·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51
	가족역량강화 지원	24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미취학	가정양육수당 지원	102
	가정위탁아동 지원	135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98
	만 0~2세 보육료 지원	100
	만 3~5세 누리과정	10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06
	시간제 보육 지원	106
	아이돌봄서비스	104
초·중·고	고교학비 지원	118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19
	급식비 지원	119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20
	다함께 돌봄 사업	10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8, 274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1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3
	사랑의 그린PC 보급	53
	지역아동센터 지원	117
	초등돌봄교실	116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124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301
	학교 우유급식	12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69
장애인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207
	언어발달 지원	227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06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06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203
	장애인 정보화교육	208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207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182
다문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7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76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276
기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22
	온라인 정보화교육	182
	일학습병행	80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264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28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26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25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2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27
	인문100년장학금	129
대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3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31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7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72
	사회공헌활동 지원	77
	자활근로	66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66
	청년내일채움공제	8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211
	해외취업 지원	82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78
취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80
	내일배움카드제	6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8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89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5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212
취업훈련	일학습병행	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21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213
	청년취업아카데미	7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79
	내일이룸학교	84
	취업성공패키지	6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64
자립	내일키움통장	69
	희망키움통장(Ⅰ, Ⅱ)	68
고용안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48
	근로장려금	70
	근로 지원인 지원	221
	실업급여	6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78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4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안정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7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97
	육아휴직 급여 지원	96
	자녀장려금	71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17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14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29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4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9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98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95
창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78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73
	여성 창업 경진대회	7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219
	장애인 창업육성	22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1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215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16

주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25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긴급복지 지원제도	22, 274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7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8, 27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영구임대주택 공급	25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23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2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2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270
	행복주택 공급	26
주거 수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3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4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35
	에너지바우처	3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38
	주거급여(맞춤형급여)	33
주거 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39
	버팀목 대출보증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40
	보금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1
주거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34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34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41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28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70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8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8, 27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6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0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15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61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58
	입양아동 지원	107
	재난적 의료비 지원	15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14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
건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57
	장애인 활동 지원	23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69
노인 건강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8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7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1
	노인틀니 지원	186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188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87
	치매검진 지원	18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84
영유아아동 건강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14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11
	영유아 건강검진	113
	어린이 불소 도포	115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113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증진	재가암 관리	16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0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69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22, 274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2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68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40

문화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8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80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56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50
	청소년활동 지원	151
	통합문화이용권	54
장애인	장애인 체육시설	242

서민금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48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87
	새희망홀씨	47
	햇살론	45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43
	미소금융	44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39
	버팀목대출 보증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시)	40
	보금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41
사업자금	미소금융	44
	소상공인 지원(융자)	49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21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47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3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31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50
	바꿔드림론	4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50
	안전망 대출	46
	햇살론	45
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57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59

기타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6.25자녀수당	251
	고엽제환자 2세 수당	252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51
	교통시설 이용 지원	25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5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265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263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257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64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258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252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4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4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47
	양로지원	254
	양육지원	255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259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60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256
	무공영예수당	247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54
	보훈병원진료	255
	요양지원	253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48
	영주귀국 정착금	248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56
	재가복지지원	253
	재해위로금	250
	참전명예수당	250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258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264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26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62

기타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사상자	의사상자 지원	299
	재해보상금	249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306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지원	307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07
위기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68
	미혼모·부 초기 지원	268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28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8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82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44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281
	성폭력 피해자 지원	279
	여성긴급전화 1366	27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36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85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28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87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286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8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89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288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88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290
농어업인·도서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297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9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9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33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296
	농업인 안전보험	29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98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98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33

기타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농어업인·도서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29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93
	어업인 안전보험	293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294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294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295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도우미)	295
입양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93
	입양아동 지원	107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02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226
노숙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304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70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64
	법무보호복지 사업	305
중증질환·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5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66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7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309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67
석면피해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305
진폐	진폐근로자 보호	308
한센	한센인 피해자 지원	308
풍수해	풍수해보험	310
알코올 등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70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309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311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2

법률복지

구분	사업명	페이지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314
	무료 법률상담	314
	법률홈닥터	315
법률지원 (조정·중재·소송지원)	법률구조 제도	316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318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18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319
세무지원	마을세무사	315
교육	법문화교육센터	315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

ㄱ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6
Wee클래스·Wee센터· Wee스쿨 상담지원 (Wee프로젝트)	Wee프로젝트 특임센터(☎043-530-9182, 9184)	14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1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2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283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4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9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 대구(☎053-756-1801),	31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268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5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6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54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278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7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7
고교학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8
고령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053-230-1392)	182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1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7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3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157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1588-3249)	6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109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소속 학교	122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63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8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0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 (☎02-782-0427)	265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3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2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8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0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9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한국장학재단(☎1599-2000)	126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044-203-6561)	20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94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콜센터(☎1397)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50
근로 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2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48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0
급식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9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9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30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20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4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 274
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6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5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84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9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4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18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178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7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정부대표전화(☎110)	191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180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7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17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LH마이홈(☎1600-1004)	34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5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175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588-2100) Sh수협은행 고객만족센터(☎1588-1515) 산림조합(☎02-3434-7222)	297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9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292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233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담당자	296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293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80)	298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98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3
ㄷ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8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7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1599-2290)	275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02-2663-8710)	27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276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8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33~4)	296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18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0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ㅁ		
마을변호사	읍면동 주민센터, 법무부(☎02-2110-3178)	314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315
만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100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114
만 3~5세 누리과정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101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6851)	18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18, 274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7
무료 법률 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35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314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1397)	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1
미혼모·부 초기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268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ㅂ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4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8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8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235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국토교통부(☎1599-0001)	4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311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316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315
법무보호복지 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305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132)	315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39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8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9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257
보훈병원진료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3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1)	302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 시군구청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1355)	300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300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02-3215-5881~4)	30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50)	301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430)	303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9)	30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8
ㅅ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랑의 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53
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3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7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2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5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7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6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9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288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88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290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1397)	47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1397)	43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서민금융콜센터(☎1397)	57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1397)	59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34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30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1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2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1366)	144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4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228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5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특별지원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8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79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4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66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242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56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4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236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6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10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5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35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78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2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134
ㅇ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1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137
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4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1577-2514)	104
안전망 대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4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8
양곡할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2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4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2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181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등	193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293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293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7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3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3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72
여성 창업 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5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3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7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74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27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전화(☎1388)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1번)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122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5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0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1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306
영주귀국 정착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8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8
온라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053-230-1392)	18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9
요양비(출산비)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5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307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7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108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6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77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시군구청	159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8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0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99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7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02-722-2585)	152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1599-2290)	129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07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0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91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3
입양아동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07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7
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126)	71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258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4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61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6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206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9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4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5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3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4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23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7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4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9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5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226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청 콜센터(☎126)	23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242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237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1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8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23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콜센터(☎126)	238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208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1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LH마이홈(☎1600-1004)	233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14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2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19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2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6
장애인 활동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21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청 콜센터(☎126)	240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0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02-2100-3399)	239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	243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3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208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3
재가암 관리	전국 보건소	169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8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49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38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291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1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6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16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262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LH마이홈(☎1600-1004)	273
주거급여(맞춤형급여)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33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41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국토교통부(☎1599-0001)	4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2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02-3482-1708),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1801),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318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17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1유형)	한국장학재단(☎1599-2290)	13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26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k-스타트업(☎1357 3번)	78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2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21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콜센터(☎126)	240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50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_Net)	청소년전화(☎1388)	147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일자리국(☎ 062-360-7755)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032-625-9011)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041-521-2321) 전라북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063-281-2845) 경상남도 김해시 시민복지국(☎ 055-330-6714)	19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1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9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보라매병원 ☎02-870-2071)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333-2229)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23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9)	99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308
ㅊ		
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25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7
청년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9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79
청년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79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02-330-2892, 2896, 2898)	14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34)	11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0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144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145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전화(☎1388)	143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2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전화(☎1388)	14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전화(☎1388)	148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전화(☎1388)	147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14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1
청소년활동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15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119
초등돌봄교실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116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9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8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8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95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32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꿈사다리 장학제도)	소속 학교	124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294

취약농가 인력 지원(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12)	294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6)	295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도우미)	**각 시도 담당사무소**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2) 강원 환동해본부(☎033-660-836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6) 충남 어촌산업과(☎041-635-6960)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기술원(☎061-550-0649) 경북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295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131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3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84
ㅌ		
탈북학생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30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학력 인정 : 통일부(☎02-2100-5785) 그 외 지원 : 남북하나재단(☎1577-6635)	301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1644-4000, 수령 등록 및 분실신고 등)	54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31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교육부(☎044-203-6560)	207
ㅍ		
평생교육 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3005)	58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283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8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	310

ㅎ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전화(☎1388)	1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141
학교 우유급식	소속 학교	121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13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0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69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1544-9654)	269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270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0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280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82
햇살론	▪ 근로자 햇살론: 서민금융콜센터(☎1397) ▪ 사업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45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26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6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
희망키움통장(Ⅰ, 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8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DB손해보험	☎1588-0100
KB국민은행	☎1599-9999
KB손해보험	☎1544-0114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스타트업	☎1357
LH마이홈	☎1600-1004
NH농협생명	☎1544-4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NH농협은행	☎1588-2100
NH농협카드콜센터	☎1644-4000
SH	☎1600-3456
Sh수협은행	☎1588-1515
Wee 프로젝트 특임센터	☎043-530-9182, 9184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주요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세청 콜센터	☎126
국토교통부	☎1599-000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디딤씨앗지원단	☎02-790-0786
롯데카드	☎1899-4282
문화누리카드콜센터	☎1544-34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훈원	☎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
산림조합	☎02-3434-7222
산림청	☎1588-3249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삼성카드	☎1566-3336
삼성화재	☎1588-5114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수협공제보험 고객센터	☎1588-4119

주요기관	연락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시간제 보육 콜센터	☎1661-9361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듀콜센터	☎1544-0079
여성가족부	☎02-2100-600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우리은행	☎1588-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670-552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청소년전화	☎138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코레일	☎1544-7788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530-9481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

주요기관	연락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290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교육	☎053-230-1392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해양수산부	☎044-200-5733~4
행정안전부	☎02-2100-3399
현대해상	☎1588-5656
환경부	☎1577-8866

MEMO

펴낸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
범부처정보지원부

인쇄 2019년 5월
디자인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